



정치관계법의 이해



목 차

- 
- I.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 II. 최근 개정된 정치관계법 등 주요내용
 - III. 효과적인 선거운동 전략 및 제한·금지 행위
 - IV. 질의답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2018. 6. 13. 실시)

시행일정	내 용
2월 13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3월 2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4월 1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군의원 및 군수선거)
3월 15일부터(까지) [선거일전 9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후보제한을 받는 공무원의 사직 •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통·리·반의 장 등의 사직 • 의정활동 보고 금지 • 출판기념회 개최금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2018. 6. 13. 실시)

개시일	내 용
4월 1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5월 22일부터 5월 26일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5월 24일부터 5월 25일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5월 31일	선거기간 개시일
6월 8일부터 6월 9일까지	사전투표소 투표
6월 13일	선거일

**최근 개정된
정치관계법 등 주요내용**



최근 주요 판례

사전선거운동 관련 대법원 판결

제6회 지방선거에서 대전광역시장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 목적으로 ○○포럼이라는 유사기관을 설립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포럼을 통하여 전통시장 방문, 기업탐방, 시민토론회, 지역탐방, 봉사활동 등의 명목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였음.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

'선거운동'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기존 판례를 변경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판결)

선거운동 여부에 대한 판례 변경

○기존(대법원 2008. 9. 25)

-선거운동이란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함.

○변경(대법원 2016. 8. 26 선고)

-인지도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행위나, 단체 등을 통한 활동의 경우에도 그러한 행위나 활동이 **특정한 선거를 목표로 그 선거에서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음

-선거운동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명시적 출마의사 표시 및 선거에서의 지지호소' 또는 '특정선거에서 특정인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함.

선거운동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입후보예정자 활동

공직선거법 개별 규정에 따라 제한·금지되지 않는 시기(선거일전 180일 전, 선거의 실시사유 확정 전)에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여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행위는 폭넓게 허용되어야 함.**

입후보예정자의 활동에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려는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특정 선거에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음.**

선거운동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선거 관련 단체의 활동

지역구 내에서 유사기관·사조직에 이르지 않은 단체를 설립·운영하거나 그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무방함.

단체가 정관 목적에 따른 활동을 하면서 구성원인 입후보예정자의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음.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 행위

각종 행사에서 입후보예정자의 계속적 · 의례적인 축하 · 격려사

입후보예정자의 각종 행사장의 계속적 방문 인사

⇒ 의례적인 악수나 인사를 하는 것만으로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음.

일반 선거구민 대상 출판기념회 개최

국회의원 명의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 거리 게시

⇒ 선거일전 180일(선거의 실시사유 확정) 전에는 가능

※ 다른 법률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함.

사전선거운동 관련 중앙선관위 선례 변경내용

정당의 대표자가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 또는 생일축전을 소속 당원에게 발송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기존:당직자,유급직원,평소 친교있는 당원만)

신문창간일에 즈음하여 특정 입후보예정자 1인 또는 특정 정당에 소속된 입후보예정자만의 축하광고를 하거나 그 광고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무방함.

(기존엔 직.성명 등 부각하지 않고 일률적인 광고만 허용)

※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법 제93조에 위반됨.

사전선거운동 관련 중앙선관위 선례 변경내용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에 동료의원이나 후원회장 등 지인이 참석하여 의례적인 축사 및 격려사를 하는 경우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음.

연하장 형태 또는 통상적인 크기의 탁상용 달력 형태의 의정보고서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음.

국회의원이 입법활동의 일환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거나 국회의원 사무소에 민원상담실을 운영하는 경우 또는 사무소 개소식(이전 포함 사료됨) 안내 거리 현수막 게시는 선거일 전 180일 전에는 무방함.

사전선거운동 관련 중앙선관위 선례 변경내용

후원회가 후원금 기부에 대한 감사의 인사장에 후원회 지정권자인 국회의원 사진이 게재된 감사장을 발송하는 것은 무방함.

선거일 전 180일 전에 국회의원 등이 선거구민인 회원들에게 배부되는 기관·단체 발행 간행물·기관지 등에 입후보예정자의 축사를 게재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음.

특정 선거구역을 주된 배부지역으로 하는 신문사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집필하는 법률상담기사를 그의 직·성명, 사진을 밝혀 연재 가능(법률, 의료, 세무 등 특정분야 전문가 활용가능)

사전선거운동 관련 중앙선관위 선례 변경내용

국회의원이 선거기간 전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견이나 자료수집의 목적범위 안에서 선거구역을 순회하면서 주민간담회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을 사전선거운동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국회의원이 일상적·통상적인 전화통화 시 영상레터링을 이용하여 수신자의 휴대전화 화면에 정치구호를 포함하는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아니함.(내용이 선거공약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오직 나라와 국민만 생각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정치” 등



공직선거법 개정사항

1. 문자메시지, 인터넷,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제59조)

선거운동방법	개정 전	개정 후
문자메시지, 인터넷, 전자우편	선거일 제외 상시허용	선거일에도 허용
문자메시지	음성, 화상, 동영상 등 제외	음성, 화상, 동영상 등 포함



선거일 SNS에 엄지손가락, V 등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 게시 가능



공직선거법 개정사항

2. 문자메시지 – 자동동보통신 (제59조)

선거운동방법	개정 전	개정 후
문자메시지	자동동보통신 방법에 관한 명확한 규정 없음 (규칙 위임)	[자동동보통신 방법] 동시 수신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u>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u>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
	자동동보통신 전송횟수 제한(5회)	- 자동동보통신 전송횟수 제한(8회) - 1개의 발송용 전화번호만 선관위에 신고 후 사용



공직선거법 개정사항

3. 예비후보자 명함배부 등 금지장소 범위의 축소(제60조의3)

개정 전	개정 후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 호소를 할 수 없는 구체적인 장소를 중앙선거관리규칙에 위임하고 있음.	명함배부 등 금지장소를 법률에 직접 규정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 (지하철역 구내를 포함),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	'터미널 및 지하철역 구내'에서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으로 금지장소의 범위를 축소



- ▣ 개찰구 밖은 명함 배부 허용
- ▣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함께 다니는 자는 명함배부 불가

효과적인 선거운동 전략

선거와 정치

정치의
3요소

자금, 조직, 선거

선거의
3요소

돈, 사람, 전략

선거결과 결정

정당공천, 텃밭, 구도, 바람

“대선”이 바람으로 움직이는 하늘의 선거라면,
“지역선거”는 표밭을 가는 땅의 선거다.

Suspense
긴장

Work in
the field
소통

Wisdom
현명

Determination
각오



Strategy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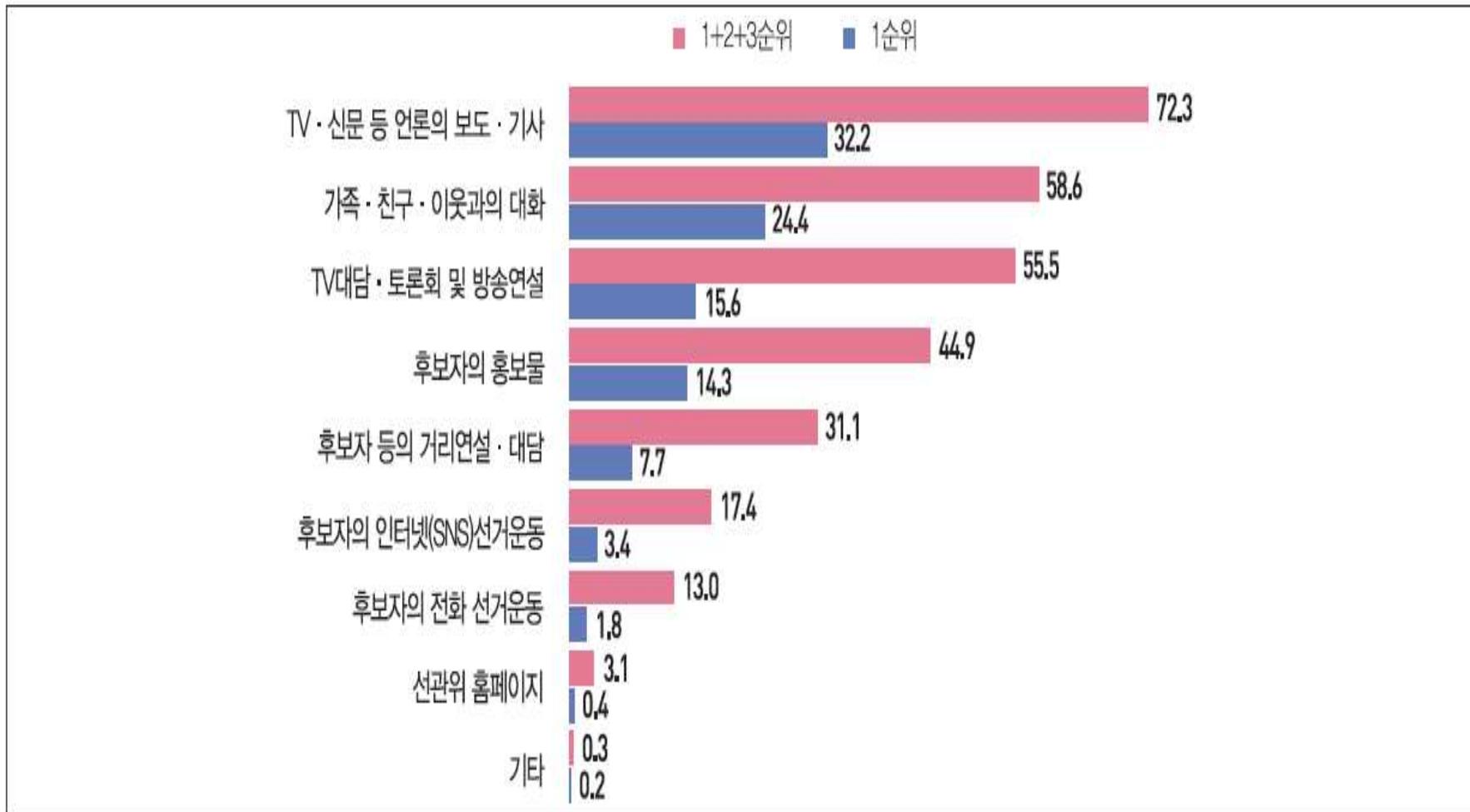
승리비결

선거전략의 법칙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효과적인 후보·정당 인지 경로



주요 제한 · 금지행위



선거운동과 제한 · 금지

허위사실 공표죄 (제250조)

당선 또는 낙선 목적

대상 : 후보자(예정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당선 목적)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등, 재산, 행위,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허위학력 포함)에 관한 허위사실

(낙선 목적)

대상자들에 관한 허위사실



가짜뉴스

주요 위반유형

- 명함 등 인쇄물에 허위학력(최고경영자과정-비정규학력) 게재
- 인쇄물·연설 이용 허위사실 공표 및 사생활 비방
- 인터넷,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이용 근거없는 루머 살포

위반사례

- 동문 모두가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고 성명서 발표(대법, 2011.3.10.)
- 종합소득세가 아닌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연설(대법, 2012.5.24.)
-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후보자 추정 비방글 게시(대법, 2008.9.11.)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된 사례



후보자의 재산형성 의혹

선거구민 상대 연설에서, "나이40살 갓 넘은 사람이 재산이 30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기자하면서 누가 장난치지 않았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마흔살을 갓 넘은 사람이 재산이 33억 있어요. A 후보자가 기자하면서 어떻게 재산을 33억씩 모았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라고 발언

例

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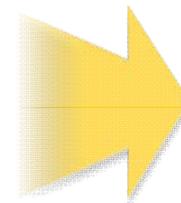
A의 재산형성 비리에 관한 의혹 사실을 함축하여 공표한 것임. A가 기자신분을 이용하여 재산을 부정하게 형성하였다는 의혹 사실을 수증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허위성이 인정**됨.(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2649 판결)



허위소문을 사실 그대로 전달 하는 것도

허위사실 공표인지?

- '어떠한 소문이 있다' 라고 공표하여도
- 소문의 내용이 허위이면



허위사실
공표

기부행위의 상시 제한

주체별	제한기간	제한내용
국회의원·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예정자)와 그 배우자	상시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금전, 물품, 이익제공(주례행위포함)행위금지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정당선거사무소장, 후보자 나 그 배우자의 가족 등	선거기간 전	당해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 금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 기부행위금지
제3자(누구든지)	상시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 금지



기부행위 **약속** 후 취소해도 위반될까요?





기부행위 **약속** 후 취소 하여도 위반됩니다

- 약속과 동시에 위반죄 성립
- **취소하여도** 위반(선거법 11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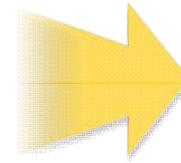
정치인이 축·부의금, 받은 만큼 돌려주면 괜찮은가요?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도 **위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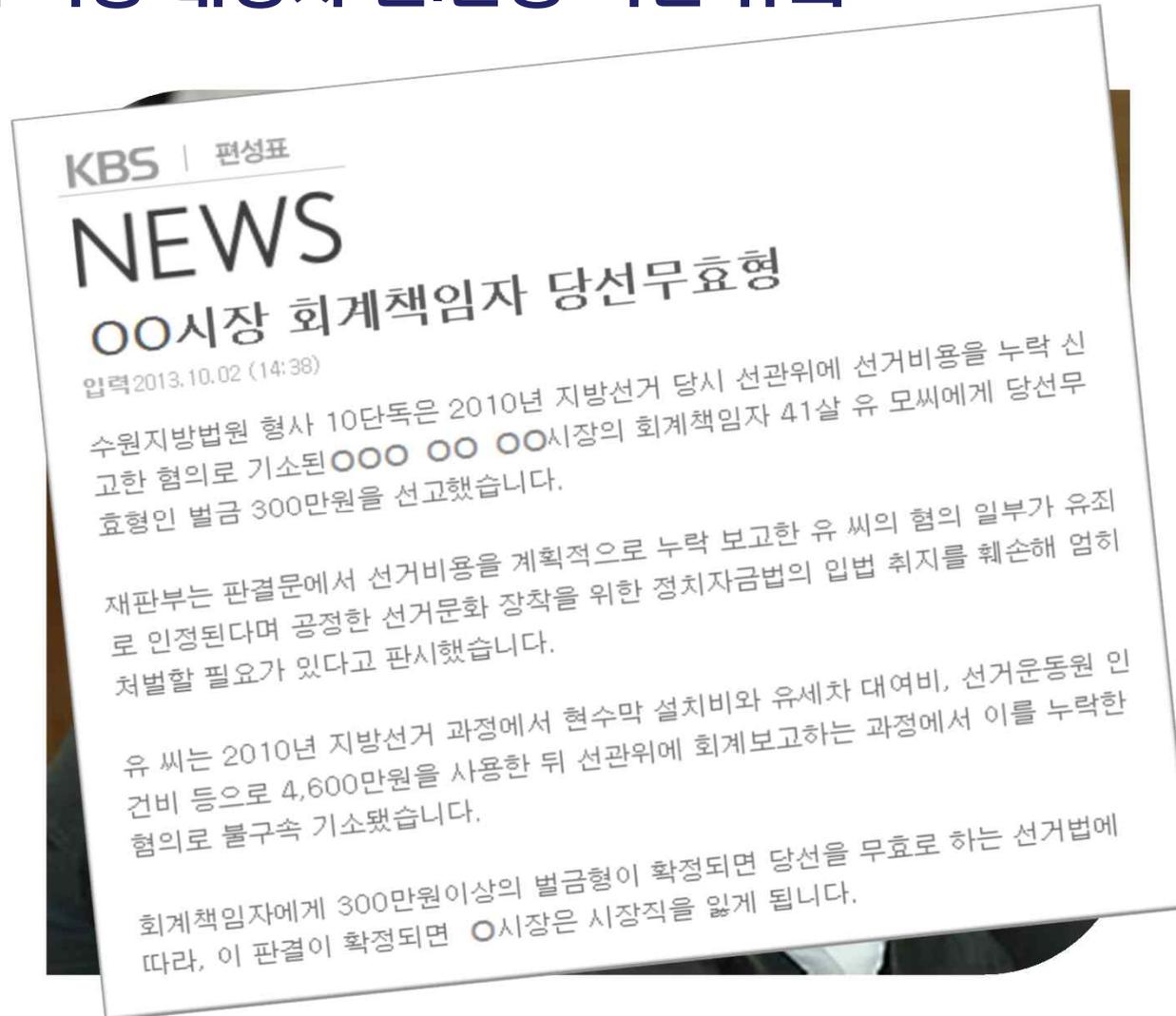
- 선거관련 언급 없더라도
-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도



기부행위



■ 연좌제 적용 대상자 돈.언행 특별 유의



연좌제 적용 대상 :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선거비용 초과지출, 매수 등 주요범죄로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